

조문 별 제·개정 이유서

1. 과징금 부과기준의 일반기준 문구 수정(안 [별표1] 제1호라목 개정)

가. 제 · 개정 이유

-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321호, 2023.8.8. 공포, 2024.2.9. 시행)에 따라 관련된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나. 제 · 개정 내용

-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라목의 문구 수정(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 법령인 「식품의약품검사법」 개정 입법목적 달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없음